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「지방자치법」 개정 및 「전남광주통합특별법」 제정(‘26.3.5.)·시행(‘26.7.1.)예정으로 관련된 해양경찰청 소관 6개 시행규칙에 대하여 일괄개정 추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「지방자치법」 개정 및 「전남광주통합특별법」 제정에
따른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
6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1조(「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광역시장·도지사”를 “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”로 한다.

별지 제8호 해양재난구조대 치료 신청서란 중 “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”를 “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”로 한다.

제2조(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한다.

제3조(「해양경찰수사규칙」의 개정)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1항 단서 중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”를 “통합특별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”로 한다.

제4조(「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의 개정)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서해해양특수구조대의 관할구역란 중 “전라남도”를 “전남광주통합특별시”로 한다.

별표 2의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목포해양경찰서 관할구역란 중 “광주광역시, 전라남도 목포시”를 “전남광주통합특별시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”로 하고, 같은 지방청 완도해양경찰서 관할구역란 중 “전라남도 강진군”을 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”으로 한다.

별표 3의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에서 위치란 중 “전라남도”를 “전남광주통합특별시”로 한다.

제5조(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」의 개정)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등급 및 대상기관의 주소란 중 “전남”을 “전남광주특별통합시”로 한다.

제6조(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”를 “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”로 한다.

별표 1의 서해광역구조본부란 중 “전라남도”를 “전남광주통합특별시”로

한다.

별지 제6호 보상금(치료) 신청서란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”를 “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1조(치료 신청) 「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1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치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거쳐 임무 수행 장소 또는 교육·훈련 장소를 관할하는 <u>광역시장·도지사</u>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	제21조(치료 신청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</u>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[별지 제8호서식]	[별지 제8호서식]
<u>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</u>	<u>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</u>
<u>지사</u> 귀하	<u>는 특별자치도지사</u> 귀하

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<u>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</u> 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「수상레저안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4항에 따라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	제2조(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<u>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
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사체의 인도) ① 사법경찰관은 변사자에 대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에는 사체를 소지품 등과 함께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한다. 다만, 사체를 인수할 사람이 없거나 변사자의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현존하는 지역의 <u>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</u>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도해야 한다.	제31조(사체의 인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<u>통합특별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</u> ----- -----.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[별표 1] 서해해양특수구조대 <u>전라남도</u> 목포시 [별표 2] 서해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○ <u>광주광역시, 전라남도</u> 목포시 완도해양경찰서 ○ <u>전라남도</u> 강진군 여수해양경찰서 ○ <u>전라남도</u> 여수시	[별표 1] 서해해양특수구조대 <u>전남광주통합특별시</u> 목포시 [별표 2] 서해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○ <u>전남광주통합특별시,</u> <u>전남광주통합특별시</u> 목포시 완도해양경찰서 ○ <u>전남광주통합특별시</u> 강진군 여수해양경찰서 ○ <u>전남광주통합특별시</u> 여수시
[별표 3]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 전라남도	[별표 3]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 <u>전남광주통합특별시</u>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

일부개정령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[별표] 지급 대상기관 주소 개정 <u>전남</u>	[별표] 지급 대상기관 주소 <u>전남광주통합특별시</u>

수상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개 정 안
제11조(보상금 지급 또는 치료 신청) 법 제29조제3항(법 제30조제7항 및 「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나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(치료)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조난지역 또는 해당 수난구호업무(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우에는 「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·훈련을 말한다)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<u>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</u>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11조(보상금 지급 또는 치료 신청) ----- <u>특별</u> <u>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</u> ----- -----.

1. ~ 3. (생 략) [별 표 1] 서해광역구조본부 <u>전라남도</u> 목포시 (서해지방해양경찰청) <u>전라남도</u> 여수시 (여수해양경찰서) <u>전라남도</u> 완도군 (완도해양경찰서) <u>전라남도</u> 목포시 (목포해양경찰서) [별지 제6호] 특별시장·광역시장· 도시자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	1. ~ 3. (현행과 같음) [별 표 1] 서해광역구조본부 <u>전남광주통합특별시</u> 목포 시 (서해지방해양경찰청) <u>전남광주통합특별시</u> 여수 시 (여수해양경찰서) <u>전남광주통합특별시</u> 완도 군 (완도해양경찰서) <u>전남광주통합특별시</u> 목포 시 (목포해양경찰서) [별지 제6호] 특별시장·<u>통합특별시</u> <u>장</u>·광역시장·도시자 또는 특 별자치도지사 귀하
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해양경찰청 혁신행정부무담당관	
연 락 처	(032) 835 - 2423